

의안번호	2214781
의 퇴 인	문금주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8.
추계번호	25G659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축사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재도입 및
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재도입하고,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는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0억원, 2030년 30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26억원(연평균 24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 ¹⁾
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재도입 (안 제130조 제1항)	-10	-10	-10	-10	-	-40	-10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167조)	-	-286	-293	-300	-307	-1,186	-297
합 계	-10	-296	-303	-310	-307	-1,226	-245

주: 1) 항목별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한 연도만 고려해 계산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0조 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)	○ 축사 및 부수토지(이하 축사용지)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,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- 적용기한: (현행) 2017년 일몰 (개정안) 2029.12.31. 양도분까지 적용	
2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30조 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)	○	
2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재도입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, 부동산 양도일이 포함된 연도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
-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재도입하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양도소득세 최근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
 -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감면은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10%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가정
 - 최근 조세지출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, 2023~2025년 감면실적 평균 수준에서 향후 양도소득세(국세)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

나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 - 2026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2027년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~2030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
- 향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과세표준 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
 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※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4년 이전 감면실적은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를 반영해 조정한 후 활용
 -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2020~2024년)간의 감면 실적의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2025년 실적(잠정치)에서 최근 5년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(2.4%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산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감면 제도입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해당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 및 부수 토지(이하 '축사용지')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,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100%를 감면하는 제도로, 2017년 12월 31일 일몰된 상황
 - 이와 관련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(국세)의 경우, 회답일(2025.12.8.)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¹⁾
- (감면실적)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(국세)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

1)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, 2025.12.2. 원안가결 (의안번호 2214738)

[표 2]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p	'23~'25년 연평균
감면실적	191	85	114	124	67	102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(2) 추계 방법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3~2025년 감면실적 평균(102억원) 수준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며, 지방소득세 감면은 국세 전망액의 10%(연간 10억원)로 가정하여 추계
 -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,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추계
 -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(국세)의 10% 수준으로, 감면액도 국세의 10%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가정

(3) 추계결과

-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감면을 재도입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2026년 10억원, 2029년 10억원 등 4년간 총 40억원(연평균 1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감면 재도입(안 제130조 제1항)	-10	-10	-10	-10	-40	-10

나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
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법인세는 9~12%(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0.9~1.2%)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4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연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 +손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¹⁾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0.9% ²⁾	0.9%
	2~20억원	1.9% ²⁾	
	20~200억원		1.2%
	200~3,000억원		
	3,000억원 초과	2.4% ²⁾	

주: 1. 세율은 법인지방소득세 기준

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0.1p씩 높은 세율 적용

□ (감면실적) 조합법인 과세특례로 인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2025년 산출세액 잠정치 기준 273억원 수준

-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실적은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의 조합법인 과세특례로 인한 법인세 감면실적에 10%를 적용한 값으로,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값

[표 5]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 추이: 2020~2025년(잠정)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조합법인 감면실적	327	334	423	511	317	273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
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 -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
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6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 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 억원)	
합 계	3,172	41,728	-	424	-	741	-317
2억원 이하	855	615	0.9	6	1.0	6	0.1
2~20억원	1,801	15,092		136	2.0	251	-115
20~200억원	511	24,745	1.2	267		460	-193
200~3,000억원	5	1,276		15	2.2	25	-10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
실적을 조정
 -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
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7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3,172	41,728	—	—	—	783	—	—	741
2억원 이하	855	615	0.7	1.0	0.007	6	0.9	0.006	6
2~20억원	1,801	15,092	8.4	2.0	0.15	266	1.9	0.14	251
20~200억원	511	24,745	48.4		0.95	485		0.9	460
200~3,000억원	5	1,276	255.2	2.2	5.19	26	2.1	4.94	25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—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4년 기준 11.6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8]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4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-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-D)	
산출세액	424	783	359	741	317	-11.6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— 2024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면,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은 연
평균 2.4% 증가함

[표 9]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 ('20~'24년)
특례 실적	조정 전(A)	327	335	423	511	317	—
	조정 후 (A×[1-11.6%])	289	296	374	452	317 ¹⁾	2.4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○ 향후 세수효과는 2025년 실적(잠정치)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
(2.4%)을 반영하여 추계

- 2025년 실적(잠정치)인 273억원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(2.4%)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
[표 10]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
세수효과	-286	-293	-300	-307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는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286억원, 2030년 307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1,186억원(연평균 29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지방소득세, 2027~2030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167조)	-286	-293	-300	-307	-1,186	-297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